# 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1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임이자·유용원·김승수

김용태 • 서일준 • 김미애

정희용 · 김형동 · 박성훈

이상휘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댐 건설·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댐관리 기본계획 및 댐관리 기본원칙 규정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률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댐 건설 · 관리의 목적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 · 홍수 등의

재해 예방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 나. 국가 등의 책무로서의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 예방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라. 댐관리의 기본원칙에서 고려되어야 할 홍수, 가뭄 등의 예방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하고, 그 외 기본원칙을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홍수 등의 재해예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 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 예방계획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① 댐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② 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예방,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③ 댐은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 | 제1조(목적) ------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ㆍ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 홍수 등의 재해예방, 댐건설에 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따른 환경대책-----개발 ·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 가는 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 한 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댐에 관한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 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 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자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 제 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 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 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하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② ~ ⑦ (생 략)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① 댐 관리는 홍수·가뭄의 예방, 댐 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 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 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 다.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u>.</u>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 와 가뭄 등의 재해 예방계획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공 의 이익증진에 적합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 ② 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예방,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여 관 리되어야 한다.
- ③ 댐은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되어 야 한다.